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5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정순기 의원

찬 성 자 : 엄셋별, 고영찬,

김용술,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안 제3조)

다.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 등(안 제5조~제7조)

마. 지원의 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바. 지원대상자의 관리와 통지의 의무(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 2)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30조, 제32조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4) 「방송법」 제2조
-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0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이용요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 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매월 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⑨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인판정위원회,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보건복지부령 제1050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2024. 7. 10.>

[제목개정 2019. 6. 4.]

## □ 「방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3. 22., 2006. 10. 27., 2007. 1. 26., 2011. 7. 14., 2013. 3. 23., 2015. 3. 13., 2015. 12. 1., 2015. 12. 22., 2016. 1. 27., 2020. 6. 9., 2022. 1. 11.>

1. ~ 2. (생략)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  
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 19. (생략)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  
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 27. (생략)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6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2., 2014. 12. 30., 2020. 6. 9.>

1. ~ 4. (생략)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  
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  
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